[자료 8]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8. 4. 1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 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 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 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 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사.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 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원)

		(단위: 원)
매 입 대 상	세 부 범 위	매 입 금 액
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		300,000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합계로 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중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중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중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면적 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면적 또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 민주택규모 초과 100	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주거 전 8 제 곱 ㅁ	
제곱미터 미만인 경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
가) 단독주택		"	1,300
나)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420
가) 단독주택		"	2,400
나)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5,000
나)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 제곱미터 이상 33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 66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급미터 미단인 경우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1) 극장·영화관, 「식 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 점,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제 곱 미 터 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 1,300
철골조의 건축물 3) 연와조 및 석조의		" 1,000
건축물 4) 시멘트벽돌 및 블		" 600
록조의 건축물 다. 「관광진흥법」의 적 용을 받는 관광숙박시 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 혼합된 건축물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 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자본금(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제10호의 업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증등록 당시의 자본 급은 배압급액 산 경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배립면하 면하수로의 20/100 9. 진심기계신규등록 자꾸급(법인인 경 동기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항증병자상의 전우에는 범인 등기 자보급(법인인 경 당에는 자산 병가액의 1/1,000 다만, 제기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는 자산 병가액의 1/1,000 다만, 제기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는 자산 병가액의 1/1,000 다만, 제기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한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반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반당하는 경우에 된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증에 된 기존 제7호 된 기존 제 제7호 된 기존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I	가로 이 호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신 금은 메임급에 산 점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베립면허 면허수구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새표준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장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항 증명서상의 답인 등기 사항 증명서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범인 등기 사항 증명서상의 1억 원수에는 지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가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전유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전유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는 기존 제7호 돈에는 이 호의 업종에는 이 전후		
는 제10호의 업종등록 당시의 자본급은 메업급액 산 점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편히 면허수도의 20/100 9. 건실기개신규동복 가내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성공 사업 등록(쟁신의 경우는 범인 등기 사업 등록(쟁신의 경우는 대외한다)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성공 사업 등록(쟁신의 경우는 대외한다) 11. 측량임등과 제기 변경 등기 변경 보급 기업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민매립민히 만하수구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동록 과제표준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항증명서상의 는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범인 등기 사업 등록(갱신의 경우 난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세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의 다른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목 50,000 12. 식품영업회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판주점영업 500,000 나 단판주점영업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는 기존 이 호 또
금은 메입금액 산 정 시 제외한다. 변하수수료의		는 제10호의 업종
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		등록 당시의 자본
8.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항증 명서상의 무에는 법인 등기 사항증 명서상의 납입자본급. 개인 인 경우에는 지원 명기에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홍주집영업 가가 유홍주집영업 가 700,000 나. 만란주집영업 1) 특면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홍에 관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9. 건설기계신규등록	8. 공유수면매립면허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 유예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상의 무예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급. 개인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록 당시의 자본급은 백입급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나. 단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집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업 등록(갱신의 경우 는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에의 1/1,000 다반,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등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단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제지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9. 건설기계신규등록	
중사업 및 소방시설공 사업 등록(갱신의 경우 는 제외한다) 입성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의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100,000		5/1,000
사업 등록(갱신의 경우 는 제외한다)	i '	
는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메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명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 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기존 제7호 또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는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들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700,000나. 단란주점영업 700,000나. 단란주점영업 500,000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 ·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체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기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차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체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이 호의 업종을
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의 자본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는 기존 제7호 또
금은 매입금액 산 정시 제외한다.11. 측량업등록50,000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500,000 300,00013. 「게임산업진홍에 관100,000		는 이 호의 업종
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1. 측량업등록50,00012. 식품영업허가700,000가. 유흥주점영업700,000나. 단란주점영업500,0002) 각 도청소재지300,0003) 그 밖의 지역100,00013. 「게임산업진흥에 관		
12. 식품영업허가700,000가. 유흥주점영업700,000나. 단란주점영업500,0002) 각 도청소재지300,0003) 그 밖의 지역100,00013. 「게임산업진흥에 관	11 > 10 = 2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500,000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50,000
나. 단란주점영업 500,000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12. 식품영업허가	
1) 특별시 및 광역시500,0002) 각 도청소재지300,0003) 그 밖의 지역100,00013. 「게임산업진흥에 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2) 각 도청소재지300,0003) 그 밖의 지역100,00013. 「게임산업진흥에 관	나. 단란주점영업	
3) 그 밖의 지역100,00013. 「게임산업진흥에 관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한 법률」에 따른 게임		
	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 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각 도청소재지 다. 그 밖의 지역 14.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 록		50,000 30,000 20,000 5,000,000
15. 부동산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천 만원 이상 1억원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 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13/1,000
미만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 19/1,000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1억6천만		
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	21/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		
천만원 이상 2억6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	23/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		
천만원 이상 6억		
원 미만		(
(1) 특별시 및 광	"	26/1,000
역시 (2) 그 바이 기여	"	21 /1 000
(2) 그 밖의 지역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	01 /1 000
(1) 특별시 및 광 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0/ 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27/1 222
(1) 특별시 및 광	"	25/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	20/1,000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		
만 (1) 특별시 및 광	"	40/1 000
(1) 두벌시 및 당 역시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33, 2,000
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	50/1,000
(1) 7 2/1 X 6		00/ 1,000

(2) 그 밖의 지역 3) 주택 및 토지 의의 부동산 가) 시가죠준액 1천만 원 이상 1억3천만 원 미턴 (1) 득병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죠준액 1억3 천만원 이상 2약5 첫만원 미단 (1) 특병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죠준액 2억 5첫만원 이상 (1) 특병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죠준액 2억 5첫만원 이상 (1) 특병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죠준액 1천만원 인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죠준액 1천만원 인시 및 광 여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죠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단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죠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단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죠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단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42/1,000 시 시 나) 그 밖의 지역 (55/1,000 3) 시가죠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62/1,000 지 (7) 등병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역시		1
부동산 가) 시가표준에 1천만 원 이상 1억3천만 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표준에 1억3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에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에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상속(중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에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8/1,000 시 나) 그 밖의 지역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5/1,000 3) 시가표준에 1억5원 만원 이상 기 부일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기 (25/1,000 3) 시가표준에 1억5원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	"	45/1,000
가) 시가표준액 1원만 원 이상 1억3천만 원 미만 (1) 두발시 및 광	3) 주택 및 토지 외의		
원 이상 1약3천만 원 미반 (1) 특별시 및 광	부동산		
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10/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표준액 1억3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18/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1천만원 미만 (4) 가) 특별시 및 광역 (14/1,000) 지 (15) 무별시 및 광역 (14/1,000) 지 (15) 무별시 및 광역 (14/1,000) 지 (15) 무별시 및 광역 (14/1,000) 지 (14/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반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기가표준액 5천만원 미 만 가) 목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5천만원 미 만 가) 목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4)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5)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6)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7)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8)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8)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8)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9)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10) 28/1,000	·	"	10/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 16/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 20/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 18/1,000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 28/1,000 시 나) 그 밖의 지역 " 28/1,000 시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25/1,000 " 42/1,000 " 42/1,000 " 42/1,000 " 42/1,000 " 42/1,000	역시		
천만원 이상 2억5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14/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19/1,000) 역시 (2) 그 밖의 지역 (18/1,000) 나, 상숙(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14/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2) 그 밖의 지역	"	8/1,000
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상속(중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정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기 기가표준액 1천만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기 기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등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2) 그 밖의 지역 (3) 그 밖의 지역 (4) 상속(중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7) 특별시 및 광역 시 (8) 나) 그 밖의 지역 (8) 가용 등별시 및 광역 시 (9) 가용 등별시 및 광역 시 (10) 가용 등별시 및 광역 시 (11) 가용 등별시 및 광역 시 (12) 가용 기억 (13) 가용 기억 (14) 가용 기억 (14) 가용 기억 (15) 가용 기억 (15) 가용 기억 (16) 가용 기억 (17) 가용 기억 (18) 가용		"	16/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18/1,000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14/1,000 "14/1,000 "14/1,000 "15/1,000 "19/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8/1,000 시 나) 그 밖의 지역 "25/1,000 "25/1,000 "19/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25/1,000 "19/5천만원 미산 기 학의 지역 "25/1,000 "19/5천만원 미산 기 학의 지역 "25/1,000 "19/5천만원 미산 기 학의 지역 "25/1,000 "19/5선만원 미산 기 학의 기 학			, , , , , , , ,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 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기 14/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42/1,000 기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기 42/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1) 특별시 및 광	다) 시가표준액 2억		
역시 (2) 그 밖의 지역 가.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기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5/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5/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4/1,000 기 (27)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기 (27) (28/1,000) 기 (27) (28/1,000) 기 (28/1,000) 기 (27) (28/1,000) 기 (28/1,000)		,,	20 /1 000
(2) 그 밖의 지역 나. 상속(중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기상(1,000 기사) 무별시 및 광역 기사(1,000			20/1,000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나) 그 밖의 지역 가) 특별시 및 광역 지나) 그 밖의 지역 가) 특별시 및 광역 지나) 그 밖의 지역 가) 특별시 및 광역	' '	"	18/1,000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나. 상속(증여 그 밖의		
1)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25/1,000 " 42/1,000			
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 18/1,000 시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기사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 " 28/1,000 시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기사표준액 1억5천만원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42/1,000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 28/1,000 시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 만 " 28/1,000 자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42/1,000	가) 특별시 및 광역	"	18/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	1 4 /1 000
이상 1억5천만원 미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14/1,000
만 가) 특별시 및 광역 기 28/1,000 지 나) 그 밖의 지역 기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기 42/1,000			
가) 특별시 및 광역 시 나) 그 밖의 지역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25/1,000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42/1,000		"	28/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42/1,000	'	••	05/3 000
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		"	25/1,000
가) 특별시 및 광역 " 42/1,000			
	· -	"	42/1.000
			, _,,,,,,,,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 전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10/1,000. 다 만, 매입금액이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허가		500,000
17.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 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으 로 한정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 	1/1,000
19. 「하천법」 제33조제1		점용료의 5/100
항제5호에 따른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허가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